

제437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 4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6년7월16일(목)

장 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박은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564)
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14)
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75)

상정된 안건

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박은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564) 2
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14) 2
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75) 2

(10시16분 개의)

○소위원장 김승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7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4차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독회일인데요. 오늘 논의되는 안에는 압수·수색에 대한 사전심문제 등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개정안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사실은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99%에 이르는 이런 자판기와 같은 제도하에서 수사받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 달라고 하는 많은 요청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중요한 사안을 논의하는 만큼 위원님들께서 좀 더 심도 깊은 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편으로는 보완수사권 관련해서 정점식·곽규택 두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법안을 내셨습니다. 지금이라도 내신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도 출석하지 않고 법안만 내는 그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셔서 그것에 대해서는 법안1소위 위원장으로서 유감을 표합니다.

한편 오늘 소위 회의 중에는 11시에 행안부차관과 경찰청 수사 담당 국장이 나와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할 예정입니다.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뿐만 아니라 중수청 그다음에 국가수사본부를 담당하는 행안부와 경찰청의 입장도 듣는 그런 시간이 마련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의 취재는 여기까지만 허용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박은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564)
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14)
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75)

(10시19분)

○소위원장 김승원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까지 3건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지난 세 차례의 회의에서 검사의 수사 관련 권한 삭제 및 이에 따른 제도 보완 사항에 대해 수석전문위원의 보고와 기관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오늘은 법안심사자료 목차 16번 이후, 수사절차 관련 신설 내용에 대해 계속하여 심사를 이어 나가겠습니다.

심정희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소위자료 112페이지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건부석방 구속제도 신설 내용이고요. 김용민·박은정 의원안에만 있는 내용입니다.

피의자 조건부석방과 피고인 조건부석방으로 나눌 수 있는데, 구속영장 발부 시에 보석조건을 붙여서 영장 발부와 동시에 피고인을 석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피의자 조건부석방에는 보석조건 외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조건, 그 밖에 판사가 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형사소송법에 새롭게 들어오는 내용으로서 장단점 및 수사실무 등을 고려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수사절차와 관련된 피의자 조건부석방 같은 경우에는 피의자가 출석 요구에 불응·회피하거나 수사기간 장기화 등의 우려 등이 있어서 피의자 수사와 관련해서 조건부석방이 적절할지 이 부분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조건부석방 구속제도를 신설하게 된다면 지금 현행 제도에 있는 구속적부심 절차에서 기소 전 보석 제도가 있습니다. 내용상 유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함께 통합할 필요가 없는지를 살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2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압수·수색 시 참여권 구체화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조문에서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 시에 미리 집행 일시나 장소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당사자가 불참 의사를 명시하거나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개정안의 경우 이런 단서조항의 사유가 해소가 되면 영장의 집행 일시·장소를 통지하도록 하고 집행 참여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김용민·박은정 의원안에만 있는 것이고요. 그 외에 전자정보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지금 현행 해당 조항에서는 통지의무와 그 단서만 규율하고 있는데 김용민·박은정 의원안에 가면 집행 참여 기회 부여라는 새로운 의무 조항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 조문과 조문 구조가 맞지 않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단서에 따른 당사자의 불참 의사, 급속을 요하는 때의 해소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당사자의 불참 의사가 해소됐다면 변심을 해서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인데 이런 경우에도 이러

한 관련 권한을 부여하는 게 맞는지 이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정보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행 조문에서는 전자정보 압수·수색 시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하도록 되어 있어서 압수 대상이 정보저장매체인지 전자정보인지를 조문 간에 명확히 하셔야 될 것 같고, 김용민·박은정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관련 정보 제공 의무를 부여하면서도 예외 사유들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수사실무 등을 고려해서 조문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에 124페이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내용입니다. 새로 도입하는 내용이고요. 김용민·박은정 의원안에만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사기관, 수사기관이 신청한 참고인을 소환해서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전자정보 영장 청구 시에는 정보저장매체나 검색어 이런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영장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까지 담고 있습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제도의 취지와 별개로 수사실무 등을 고려해서 수사의 신속성을 저해할 염려가 없는지 그리고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영장에서 구체적인 검색어 이런 것들을 기재하는 게 현행 실무와 맞는지 등을 고려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29페이지, 피의자 진술 녹음·영상녹화 의무화 신설 내용입니다. 김용민·박은정 의원안에만 있는 것이고요.

수사 중인 사건의 조사·신문·면담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피의자의 최초 진술부터 종료 시까지 전 과정을 녹음 또는 영상녹화 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영상녹화물은 전문증거라는 점에서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데 이런 전 과정의 진술에 대해서 증거를 만드는 것이 공판절차 진행 때 실효성이 있는지 부분을 검토해서 수사실무상 상당히 부담이 된다는 점 참고하시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132페이지입니다.

열람·등사 남용행위 처벌의 과태료 전환인데요 김용민·박은정 의원안에만 있습니다.

지금 현행 조문은 열람·등사된 서류 등을 남용했을 때 형사처벌 하도록 돼 있는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부과하는 부분입니다. 과태료로 전환했을 때 위하력이 약화된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마지막 부칙 부분 보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지금 이 형소법이 개정된다면 원칙적인 시행일은 올해 10월 2일이라고 시행일을 지정해야 될 것 같은데 준비기간이 촉박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시행일은 10월 2일로 하되 급하지 않은 것들은 시행일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137페이지입니다.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이 있는데 공소청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형소법 부칙에는 넣을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대신 수사권이 없는 검사가 이전에 행한 처분·행위라든가 조서 등의 작성에 대해서 유효하다는 이런 경과조치 규정이 오히려 필요합니다.

그리고 138·139페이지를 보시면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서 일반적인 개괄적인 조항을 두

고 있지만 이런 개괄적인 조항은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거나 검사를 수사기관으로 단순한 용어 변경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개괄적인 조항으로 해석이 됩니다만 지금의 형소법 개정 사항은 이런 것으로 저희가 모든 것을 타법 개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39페이지를 보시면 관련된 법령들이 180건 이상으로 저희가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정확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 범위의 엄청난 많은 타법 개정이 필요한데요.

우선은 법사위 소관 법령 중에서도 공소청법이나 공수처법, 상설특검법, 형법 이런 내용들을 별도로 검토해서 개정해 주셔야 되고요. 다른 위원회 소관 법률 중에 단순한 명칭 변경은 저희가 형소법이라든가 공소청법 부칙에 담을 수 있습니다만 내용과 관련된 부분은 개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셔서 통과시켜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수고하셨습니다.

기관 의견 듣겠습니다.

법무부부터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먼저 16번, 조건부석방 구속제도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불구속수사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제1심 형사공판사건의 구속 인원 비율이 약 40% 이상에 이르렀던 2000년대 초반경부터 도입이 검토되었던 제도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사법 실무는 1심 구속률이 10% 미만으로 유지될 만큼 불구속수사 원칙이 공고히 확립되어 있어 제도 도입의 명분이 낮습니다. 특히나 이 조건부석방 제도는 미국과 같이 구속수사기간에 제한이 없거나 독일, 프랑스와 같이 최장 4년까지도 구속이 가능한 국가에서 장기구속에 따른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로서 구속기간이 비교적 짧은 우리나라, 일본 등에서는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사후통제 중심의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에 엄격한 사전구속 심사와 구속 후 구속적부심과 보석으로 이어지는 이원화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고 수사 단계의 구속기간이 상대적으로 매우 짧은 국내에 도입할 실익이 적다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부작용은 사법 불평등과 국민적 불신입니다. 만약 보증금 납입 등을 조건으로 내걸게 된다면 ‘유전석방, 무전구속’이라는 논란을 피할 수 없으며 중대 범죄자가 경제적 여력으로 풀려나는 모습은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사법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접근 가능한 상태가 되어 보복범죄 및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조건 위반 시 수사 장애 회복이 불가능하며 도주·증거인멸의 우려도 보석 피고인보다 훨씬 높은 점 그리고 조건 준수 여부를 감독할 주체와 기관 간 역할 분담이 전무한 상태인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17번, 압수·수색 시 참여권 구체화에 대한 의견입니다.

먼저 122조 2항 영장집행 참여 기회 부여 관련 규정 신설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의 진행 여부가 참여권자의 의사에 좌우되고 참여 의사 포기·번복을 반복할 경우 수사 지연과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높습니다. 또한 급속을 요하는 때는 통상 압수·수색 영장 집행 사실을 미리 알려 줄 경우 증거물을 인멸하거나 은닉할 염려 등이 있는 경우일 것인데 압수·수색 종료 후 통지는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하게 영장 집행의 위법성 논란

만 야기하는 결과가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제123조의2 영장 집행권 참여권자의 의견진술권 신설과 관련해서는 현행 법체계는 압수가 위법한 경우 준항고를 통해 사후적으로 위법성을 다룰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에게 광범위한 의견진술권을 부여할 경우 압수·수색의 목적 달성을 저해하고 실제 진실 발견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공범, 피해자, 참고인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에도 피의자의 참여권 및 의견진술권을 보장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는 수사 보안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인권 등 사생활 침해의 우려도 크다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123조의3 전자정보 압수·수색 시 정보제공 의무 도입과 관련해서는 압수·수색 실무 현장에서 압수에 참여시킬 대상자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피압수자들의 허위 진술이 의심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안과 같이 정보 제공이 강제될 경우 압수·수색 현장에 혼선이 발생하거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제130조의2 압수·수색 절차의 조서 기재 의무 신설과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123조의2 신설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고 제2호, 제3호는 현행 규칙의 내용을 법으로 상향하는 것으로서 이견이 없습니다.

18번,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관련입니다.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는 수사의 밀행성을 전제로 서면심리 방식으로 운영되어 온 압수·수색 영장 심사 절차에 대해서 대면심문을 도입하는 것으로서 영장재판의 구조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어서 검찰개혁 중심의 형소법 개정 논의와는 별도로 검토하고 논의함이 상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이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는 수사의 밀행성과 신속성을 담보할 장치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이는 단기간 심의로 결론 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현행 체계상 재판기관인 법원이 모색적 심문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에서 심문 사항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심문 대상에 참고인을 포함할 경우 수사의 밀행성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 헌법은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전형적인 절차로 심문을 들고 있는데 법원이 수사기관이나 참고인을 상대로 질문을 하는 것을 심문으로 규정하는 입법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심문 내용에 대한 조서 작성 여부와 그 법적 성격, 이후의 공판에서의 증거능력, 피의자 변호인의 열람·등사 가부 등 심문 결과의 기록과 활용에 관한 내용은 증거법 체계 및 방어권 보장과 직결되는 문제여서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자정보 제공에 대한 영장 청구 시 구체적 집행계획을 기재하도록 하는 것도 검찰개혁 중심의 형소법 개정 논의와는 궤를 달리하는 문제입니다. 압수·수색 영장 청구 시에 집행계획을 추가하고 법원이 압수·수색의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한하도록 하는 것은 법관이 직접 수사를 주재하는 것으로서 심판기관인 법원이 수사기관으로 변질된다는 비판 제기가 우려됩니다.

압수·수색 현장 상황은 매우 가변적이어서 실제 집행 전에 미리 예측하기 어렵고 관련자들의 언행이나 분위기 등을 파악하거나 탐색 작업을 일부 실행한 이후에 확인되는 경우가 많아서 검색어 등 구체적 집행계획을 미리 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해당 범죄 분야에서 사용하는 은어가 있거나 고의적인 오탈자 등을 사용해서 문서를 작성하게 되면 검색어 기재 자체가 무의미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울러 현행법상 압수·수색 영장의 사본을 피의자에게 교부하도록 돼 있는데 집행계획 등을 기재할 경우 수사기법 노출이 필연적이고 해당 사건뿐만이 아니라 관련사건에서도 수사 대상자가 증거인멸로 나아갈 우려도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19번, 피의자 진술 녹음·영상녹화 의무화 신설 관련입니다.

이 사항 또한 검찰개혁 중심의 형소법 개정과는 별도로 논의해야 될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현행법상 영상녹화물은 조서의 진정성립 입증 또는 기억 환기 용도로만 활용되고 있고 현행법에 녹음물에 대한 명문의 규정도 없어 녹음·녹화를 의무화하더라도 실효성이 크지 않으므로 녹음·녹화물 자체에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먼저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간단하거나 단순 민원성 사건까지 의무적으로 녹음하도록 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도 볼 수 있고 또한 참고인은 여전히 의무 녹음 대상이 아닌 상황인데 대질조사 시 피의자에 대한 의무 녹음으로 인해서 참고인의 진술까지 녹음될 경우 참고인 의사에 반하는 조사가 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면에서 살펴보면 시설·장비 부족으로 수사 지연의 발생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녹화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녹음해야 된다는 규정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이 영상녹화의 요건인지 절차에 대한 것인지도 불분명한 문제도 있습니다.

20번, 열람·등사 남용행위 처벌 과태료 전환과 관련해서는 열람·등사 서류 남용 시 수사기밀 유출, 개인정보 노출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사 입법례 등을 참조하여 비범죄화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21번, 명칭 변경 관련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제정 공소청법은 기존 ‘대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지칭하도록 하고 기관 전체의 명칭도 ‘공소청’으로 하도록 해서 이를 단순히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개정하게 되면 그 의미가 불분명해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컨대 형소법 제67조를 김용민 의원님 안과 같이 ‘법원 또는 공소청 소재지’라고 개정할 경우에 여기에 공소청이 대법원에 대응하는 대검찰청 의미의 공소청의 개념인지 아니면 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법검찰청을 통칭하는 개념인지 불확정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공소청법 시행 전인 시점에서 이런 문제를 고려해서 대검찰청에 대응하는 대공소청 개념을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김용민 의원님 안은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을 ‘공소청이 속한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으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조문을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공소청’으로 개정하고 있는데 하나의 공소청에 속한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이 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 등 여럿일 수 있기 때문에 현행과 같이 ‘대응한’의 문구를 사용하는 구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칙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칙 중 시행일에 대해서는 개정 정부조직법, 공소청법 및 중수청법 시행일에 맞춘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이는 공소청 및 중수청의 개청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서 결정할 사

항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경과조치와 관련하여 차규근 의원안 부칙 제2조는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공소청법 부칙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소청법 해당 규정은 공소청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일 뿐 검사의 권한의 변경에 관한 조문이 아니기 때문에 검사의 권한에 관한 경과조치가 필요하다면 형사소송법 부칙에 별도의 조문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규근 의원안 부칙 제3조의 다른 법령과의 관계 조문을 법률의 제명 변경, 법률의 용어·명칭 변경 등에서는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검사의 권한이 변경되는 상황에서 실제적 내용 변경이 수반된다면 해당 부칙은 적정하지 않고 필요시 관련 법률 자체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법원행정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6번, 조건부석방 구속제도 신설에 관한 부분입니다.

조건부석방 구속제도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면서도 피해자에 대한 위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사안에서 비례성 심사에 따른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현행 인신구속 제도의 한계를 보완할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법원은 이 부분 개정안의 입법취지 및 제도 도입 취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실형 선고를 하면서 구속·불구속 중 양자택일을 하는 것보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조건부석방을 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가 있고 실형 선고 시 전자장치 부착 등을 통해 자유형미집행자 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비금전적 조건 부과로 경제력에 무관하게 운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조건부 구속제도의 도입 여부와 무관하게 피해자·참고인에 대한 구체적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속이 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 위해의 우려에 대한 소명이 없는 경우 현행 제도상으로는 다른 구속 사유가 없다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고 아무런 조건 없이 석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건부 구속제도가 도입될 경우 석방 조건으로 전자장치 부착, 접근 금지 등을 부과해서 피해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까지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조건부석방이 되더라도 출석하지 않은 경우 석방명령을 취소하여 바로 구속이 되므로 출석을 담보할 수 있어 수사의 차질이나 장기화의 우려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압수·수색 시 참여권 구체화 부분에 관해서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자 참여권을 실질화하는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찬성 의견입니다.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적어도 저장매체에 대한 이미징 이후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미징 복제본을 분석하는 단계에서 피의자 등의 참여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피압수자가 불참 의사를 반복하여 예외 사유가 해소될 경우 영장의 집행 일시와 장소를 통지함으로써 집행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면 되는 것이므로 수사기관으로서는 피압수자의 실제 참여와 무관하게 예정된 집행을 진행하면 되고 의사 반복으로 인하여 절차가 별도로 지연되거나 방해받을 우려는 없다고 보입니다.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에 대한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수사기관 압수·수색 영장 청구 시 법원에 의한 심문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하는 압수·수색 사전심문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는 충분한 심리 수단을 확보함으로써 법관의 신중한 판단 여건을 조성하고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모색적인 압수·수색을 방지하며 실체적 진실 발견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이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적합한 수단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법원은 이 부분 개정안 입법취지 및 제도 도입 필요성에 역시 공감하고 있습니다.

수사의 신속성, 밀행성을 저해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개정안은 영장을 신청 또는 청구한 수사기관 및 수사기관이 신청한 참고인을 심문 대상으로 삼고 있고 심문은 비공개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수사기관 내지 수사기관이 신청한 참고인이 법원에 출석한다는 사정만으로 수사의 신속성이나 밀행성이 저해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오히려 사전심문제도가 도입될 경우 수사기관으로서는 영장 담당 법관에게 서면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수사의 필요성, 관련성 등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짐으로써 기각·재청구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하는 효과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 집행계획 기재 부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색어는 특정 단어만을 기재하는 방식을 고수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고 무관한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인한 인권침해는 사후적 증거능력 배제만으로는 구제가 불가능합니다.

개정안은 영장이 아닌 청구서에 검색어, 검색 대상기간 등 집행계획을 기재하게 하는 취지로서 영장 담당 법관은 전자정보에 대한 영장, 재판, 심리에 있어 그와 같은 계획을 참고해 영장의 발부 여부 및 대상과 범위를 정하게 될 것입니다.

수사기관이 집행계획 제출 단계에서 사건의 특성을 충분히 설명할 경우 영장에는 검색어를 제한적·열거적으로 한정하지 않고 검색어의 범죄유형 또는 목적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융통성 있는 검색을 허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열람·등사된 서류 등의 남용 금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형사제재인 벌칙을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로 전환하는 경우 남용 가능성은 높아지고 억지력은 약화되고 또 피고인의 경제력에 따라서 남용 억지력이 좌우될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아울러 형사전자소송에서 적용되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를 남용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과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명칭 변경 부분에도 대해서도 차관님이 말씀하셨지만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 내지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을 ‘공소청이 속한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 내지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공소청’으로 개정하는 것은 보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공소청이 속한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이 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 등 여럿일 수도 있고 반대로 상급심 법원인 경우 그 관할에 속하는 공소청이 여럿일 수도 있으므로 ‘공소청에 대응한 법원’ 내지 ‘법원에 대응한 공소청’으로 표현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관계 부처 의견을 폭넓게 듣기 위해 어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이어 오늘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님, 유승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네 번째 파트 독회와 질의응답 끝난 후 11시부터 행정안전부차관님 등에게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들으려는 그런 순서를 마련했는데 지금 오신 만큼 오늘 독회한 부분과 함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먼저 기관 의견을 함께 듣는 시간으로 일정을 조정하겠습니다.

김민재 차관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형사소송법 관련 행안부 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행정안전부는 이번 검찰개혁의 가장 큰 대원칙인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적극적으로 찬성 입장인 반면 또 수사·기소 분리를 통해서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의 달성 그리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형사사법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쟁점이 되고 있는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관해서도 이러한 관점에서 수사기관의 권한남용 방지라든지 피해자 권익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논의해서 결정해 주시면 그 입법취지에 맞게끔 최선을 다해서 후속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승렬 조정관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경찰청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수사기획조정관 유승렬**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입니다.

경찰청은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 대원칙에 따라 형소법이 개정되고 그것에 따라서 보완수사권이 폐지된다 하더라도 국민 불편이 없도록 보완수사요구를 이행할 수 있는 담보 대책을 충실히 준비를 했고 앞으로도 이 대책을 잘 실천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향후 국가 수사총량이 무너지지 않도록 앞으로도 각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지금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더 소상히 설명할 부분은 없습니까? 조정관에게 묻는 겁니다.

○**경찰청수사기획조정관 유승렬** 저희가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자료는 지금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가 되고 보완수사요구만 남았을 때 과연 경찰에서 그 보완수사요구를 제대로 이행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에 대한 저희 나름의 대책입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 가장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계시는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에 대해서 그러면 과연 검찰의 보완수사 없이 어떻게 공소를 제기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저희 나름의 대책입니다.

사실은 지금 수사시스템에 있어서 공소시효에 임박한 사건은 담당 수사관이 수시로 인

지할 수 있도록 알람 기능을 부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사실 공소시효 임박 사건이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지금 선거법과 마찬가지로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와 수시 협의를 통해서 공소제기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선거사범에 대해서만 협의하도록 돼 있는 걸 전 사건을 다 협의해서 공소시효에 문제가 없도록 대비하겠습니다.

그다음 장에 보면 검사의 보완수사가 없다 그러면 공판 과정에서 적발되는 위증 사건이나 또 무고죄 같은 경우에 대한 수사가 좀 무더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마련하고 있는 대책은 해당 범죄에 대해서 검찰에서 고발이 오거나 아니면 검사가 인지했을 때 경찰이나 수사기관에 의뢰가 오면 즉각적으로 수사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검사가 보완수사요구가…… 미진해서 수사 관서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세 번째 안이고, 이렇게 변경을 요청하면 해당 검사에게 적절한 수사 관서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부여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검사가 보완수사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수사관에 대해서 징계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경찰은 일부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보완수사요구를 이행 담보하기 위해서 이런 것까지도 받아들이겠다는 내용과 함께, 경찰에 징계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 민간인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에 직접 요청을 하고 그러면 수사심의위원회는 그 조사를 한 뒤에…… 결과를 경찰청으로부터 직접 받게 함으로써 징계 요구에 대한 이행을 담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경찰은 평가에 아주 민감합니다. 성과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승진이나 연말 성과급 지급에 있어서 불이익을 많이 받는데 검찰의 보완수사요구에 제대로 하지 않는 경찰관, 수사관에 대해서는 성과평가에서 아주 낮은 등급을 주게 함으로써 긴장감을 고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완수사요구의 이행 여부에 대한 평가는 검찰에 맡기겠습니다. 검찰에서 해당 수사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 이행에 대한 성과를 아주 낮게 주면 그거를 저희 인사시스템에 그대로 반영해서 불이익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보완수사요구를 이행함에 있어서 검사의 수시 수사 체크 그리고 수사에 참여해서 조언,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검경 협력 전담 부서도 만들고 그리고 경찰 스스로도 4중 점검체계를 통해서 국수본에서부터 시·도 청에 이르는 기관이 수시로 점검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러면 조정관님, 이번 장윤기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불안한 것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하거나 누락한 경우 그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찰청수사기획조정관 유승렬 이번 장윤기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 지휘부의 한 사람으로서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하고 또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앞으로는 개인 비리와 관련된 이런 행태뿐만 아니라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사전 점검, 좀 전에 보고드린 4중 점검체계뿐만 아니라 송치 전 단계나 또 이후에도 검사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를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오늘 서류는 ‘보완수사요구 이행 담보 대책’이라는 문건만 주셨는데

요. 지금 국민들께서는 아무래도 장윤기 사건으로 촉발된 경찰의 증거인멸 그 부분을 걱정하시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책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경찰청수사기획조정관 유승렬**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위원장 김승원** 배포를 해 주시고요. 행안부차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장님, 그래서 아마 기획조정관께서도 알고 계시는데 오늘 14시에 행안부장관하고 경찰청장직무대행이 함께 경찰 수사 내부 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와 관련해서 대국민담화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경찰 수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으로 국가경찰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을 실질적인 그리고 독립적인 민주적 통제기구로 실질화시키는 방안이 있고요. 경찰수사심의위원회도 법제화시키고 또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으로 내부 비리 수사대를 신설해서 앞으로는 절대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그것을 확행할 것을 대국민담화 할 예정으로 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예, 알겠습니다. 약간 좀 거대한 담론만 말씀하셔서 광주 사건에 대한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확실한 보완책으로는 아직 잘 와닿지는 않는데요. 좀 더 저희 위원님들 질의와 토론 과정에서 좋은 답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남희 위원님, 이제 토론 시간입니다. 먼저 하시겠습니까?

○**김남희 위원** 지금 여러 가지 대안이라고 가지고 오셨는데 협의를 잘할 수 있게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할지가 지금 내용으로는 잘 안 보이고, 그러니까 있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거는 발견할 수 있겠지만 증거인멸이라든지 이런 은폐 같은 경우에는 없잖아요. 없는데 어떻게 될 가지고 협의를 하고 문제를 어떻게 발견할 것이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추가 대응을 하겠다는 것인지 전혀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경찰위원회랑 수사심의위 얘기하셨는데 제가 현장에서 얘기를 들어 보니 수사심의위에서 문제 제기를 해 가지고 문제가 해결된 사례가 없다. 그래서 지금도 유명무실한 제도인데 위원회 하나 더 만든다고 해서 지금 비리나 여러 가지 문제 되는 것을 해결할 수 있겠냐, 그게 어떻게 대안이 될 수 있냐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행안부가 어떤 답변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좀 궁금합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하여튼 간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아주 크게 반성하면서 오늘 대국민발표 때도 아마 장관님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면서 지금 앞서 말씀드린 큰 틀에서 보완책을 하고 제도 개선을 해 나갈 건데요. 예를 들어서 사건관계인이나 지금 이런 게 서로 지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은폐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관 배우자나 준비속 상피제 같은 경우도 좀 도입……

○**김남희 위원** 그런데 이번 건은 아시겠지만 준비속 아니에요. 이미 거기서 근무하지 않아요, 그 아버지는. 그런데 예전에 근무했었던 것 그런 걸 어떻게 상피를 해요? 그것 요건에 안 맞아요.

○**경찰청수사기획조정관 유승렬**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인사 순환 방안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수사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유명무실하다고 하셨는데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약 6000여 건 정도의 사건에 대해서 심의를 했는데 좀 낮은 비율이긴 하지만 그중에서 14.4% 정도는 결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유명무실한 제도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다음, 박균택 위원님.

○박균택 위원 수사기획조정관님, 지금 국수본 소속이 아니고 경찰청 본부 소속입니까?

○경찰청수사기획조정관 유승렬 아닙니다, 국가수사본부 소속입니다.

○박균택 위원 아, 국가수사본부 소속입니까?

○경찰청수사기획조정관 유승렬 예.

○박균택 위원 그러면 더 잘됐군요.

부산의 엘시티 사건 아십니까?

○경찰청수사기획조정관 유승렬 돌려차기 사건을 말씀……

○박균택 위원 아니, 부산에 엘시티라는 부동산 개발회사가 있잖아요.

○경찰청수사기획조정관 유승렬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파악을……

○박균택 위원 그걸 모릅니까?

○경찰청수사기획조정관 유승렬 예.

○박균택 위원 부산 지역에서는 과거 십여 년도 훨씬 전부터 이영복 회장이라는 분이 지역 공직사회를 부패시켜 오고 오염시켜 왔다라고 알려져 있고 또 형사처벌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자격자가 실질적으로 회사에 사실상 회장으로 복귀를 해서 불법적인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횡령·배임 의혹을 저질렀다라고 알려지고 있고 그리고 또 최근 선거 과정에서는 부산 전 시장—박형준입니까—그분과의 유착 의혹 같은 것들 많이 제기가 됐는데 문제는 부산경찰청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한다, 어느 부서 인지는 모르겠지만 제대로 수사를 안 한다고 지역사회에서 많은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게 다 어떤 금품으로 오염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정도로 무성의하다고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수사본부는 지휘할 입장에 있는 거 아닙니까?

○경찰청수사기획조정관 유승렬 위원님, 그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되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균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모르고 있을 정도로 그런 것들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그런 수사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제대로 잘 감독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수사를 안 하고 또 피해자들이 기자회견까지 하고 시민단체가 나서서 문제를 제기해도 안 하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청수사기획조정관 유승렬 먼저 제가 수사기획조정관은 구체적인 수사를 지휘하는, 사건에 대한 지휘하는 자리가 아니라서 이 사건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박균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찰청수사기획조정관 유승렬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런 사건에 대해서 아까 차관이 말씀하신 대로 수사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해서 수사 이해관계인이 수사심의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하면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그 사건을 촘촘히 들여다볼 것이고 또 아까 말씀하신……

○박균택 위원 수사 진행 중에도 심의를 합니까?

○경찰청수사기획조정관 유승렬 예, 신청을 하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독립된

수사 인권 감찰기구가 만들어집니다. 그거는 순수하게 민간 조사원들로만 구성이 됩니다. 거기에 신청을 하면 그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왜 진척이 안 됐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를 할 것이고 보고가 될 것입니다.

○박균택 위원 어쨌든 그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수사가 이렇게 장기간 뭉개지고 있을 때 그 많은 감시의 눈, 비난의 눈 그다음에 심지어 본인들이 같이 부패가 됐다, 오염이 됐다고 오해까지 받는 상황인데도 열심히 수사하지 않는 상황이면 과연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라는 것이 제대로 통할 것인가 그런 의문이 저는 일고 있고 그런 사례로 그것을 저는 지적을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건에 대한 대책이 과연 있는 것인지 한번 파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찰청수사기획조정관 유승렬 알겠습니다.

○박균택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광주에 장윤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검찰이 경찰의 수사 은폐 의혹을 열심히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수사기획조정관 유승렬 경찰도 하고 있습니다.

○박균택 위원 그런데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시는 바가 있습니까? 조금 지나치다든가 제대로 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부족하다든가, 과부족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느끼시는 바가 있습니까?

○경찰청수사기획조정관 유승렬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서 경찰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차량 내부 SD카드를 발견한 이런 점은 검찰에서 아주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 내부의 비리에 대해서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것도, 교차수사 하더라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균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검찰이 해당 경찰서를 상대로 수사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평가를 하시는 입장이지군요.

○경찰청수사기획조정관 유승렬 그렇습니다만 다만 경찰이 특별수사단을 꾸려서 팀장도 구속을 시켰고 또 해당 상급 광주경찰청까지 압수·수색 하고 광주 경찰청장에 대해서 까지 압수·수색을 하는 등 강도 높게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좀 기다렸다가 거기에 대한 수사를 추가로 하면 어떨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박균택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검찰이든 경찰이든 숨겨진 비리, 내부적인 문제가 있으면 철저하게 하는 것은 필요하겠지요.

○경찰청수사기획조정관 유승렬 맞습니다.

○박균택 위원 그것 저도 아주 동의하는 바이고 그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광주경찰청은 왜 압수·수색을 하셨습니까?

○경찰청수사기획조정관 유승렬 의혹 제기된 것 중에 보면 광산경찰서에서 광주경찰청으로 중요 사건이니까 보고가 됐고 그러면 그 보고되는 과정에서 광주경찰청에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증거인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광주경찰청을 압수·수색 한 겁니다.

○박균택 위원 그러면 광주경찰청이나 그쪽 간부들이 피의자였습니까?

○경찰청수사기획조정관 유승렬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피의자는 아닌 상태에서 압수·수색을 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군택 위원 저는 오히려 그 부분을 가지고 좀 문제를 삼고 싶은 겁니다. 한 지역의 경찰, 치안 내지는 경찰행정을 담당하는 분들인데 피의자도 아니고 범죄가 있었다는 근거도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도 좀 애매한 상태에서 그렇게 압수·수색을 하고 그게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되고 그러면 이게 아무리 여론이 들끓는다고 해도 과연 한 지역의 경찰 책임자를 그렇게까지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도 모를 그런 상태에서 혹시 모를 이상한 상황이 있지는 않나 해서 그렇게 압수·수색을 하고 그것이 홍보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 공공기관의 위상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문제는 생각을 해 봅니까?

○경찰청수사기획조정관 유승렬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생각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다만 당연히 광주경찰청에 대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내부 비리 내지는 제 살을 깎아 먹을 정도의 강도 높은 수사를 하지 않으면 설사 압수·수색을 당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의혹이 남은 상태에서 오히려 더더욱 지역 내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위상이나 신뢰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 스스로 그거를 좀 더 밝혀 가지고 신뢰를 높이자는 차원에서……

○박군택 위원 암세포를 도려내는 건 필요하겠지만 필요 없는 제 살을 깎아 먹어서는 안 되겠지요.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취지는 여론 따라서 과잉수사가 이루어졌을 때 그런 잘못된 수사 관행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걸로 인한 피해는 또 어떻게 할 것이며, 그것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항의하는 절차라도 있는 것인가 그런 걸 좀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꼭 이 보완수사나 형소법 개정과 연관 지어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아무튼 뭔가 좀 통제돼야 할 부산 사건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느낌이 들고 또 광주경찰청 부분은 광산서를 압수·수색 하는 걸 떠나서 우리의 땀땀함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과잉수사가 이루어지는 건 아닌지 그런 두 가지 소감이 들어서 한번 질문을 드린 겁니다.

○경찰청수사기획조정관 유승렬 명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잠깐만 그 관련해서…… 제가 판사를 마치고 경찰청에서 수사이의심사위원회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열심히 해서 민원인들의 이의사항을 상세히 밝히고 그래서 한 20%가 넘는 지적사항을 시정조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 경찰관과 함께 열심히 했다고 해서 굉장히 보람 있었던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지휘부에서 왜 이쪽 경찰청에 이렇게 이의가 많냐, 나중에 국감에서 지적받고 이것 안 좋다고 하면서 오히려 경찰관이 혼났다는 거예요.

아마 김남희 위원님께서도 수사심의위원회를 만들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제도는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려고 하고 혹은 성과를 내면 그것을 받아들여서 개선시키는 게 아니라 이것 지적사항이 많고 그러니까 현행 지도부가 우리한테 이것 마이너스 된다, 국감에서 지적된다고 하면서 오히려 다음부터 너무 열심히 하지 말라는 취지의 무언의 압력을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 위원회가 이렇게 운영될 경우가 많겠더라는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김남희 위원님도 그런 것을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경찰청수사기획조정관 유승렬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사심의위원회 개선 방안 중 하나로 법제화를 하고 그리고 기존 인력풀을 2~3배, 한 100

여 명 이상으로 늘려서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대로 지역 내의 여론이나 아니면 담당 수사관 생각에 좌우되지 않도록……

○소위원장 김승원 표창을 줘야지요. 조직문화가 바뀌어야 된다는 건데……

○경찰청수사기획조정관 유승렬 맞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어쨌건 그게 통계로 해서 올라가면 국감에서 위원님들이 보면서 이것 왜 이렇게 높냐고 지적할 것 아닙니까. 그런 거겠지요, 조직에서는 윗분들이 국회에서 지적받으면 심기가 불편해지고 ‘이것 뭐 한 거야, 이 청이 잘못됐구면’, 예컨대 경기남부청이면 ‘경기남부청이 문제가 많구면’ 하면서 페널티를 준다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열심히 할 의욕이 나겠습니까?

○경찰청수사기획조정관 유승렬 그러지 않도록……

○소위원장 김승원 오히려 그런 걸 잘하면 상을 줘야지.

○경찰청수사기획조정관 유승렬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런 개선할 것을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직사회 내지는 조직문화가 이렇게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항상 유념해 두면서 위원회를 설치하든 뭘 하든 실용적으로 실속 있게 대안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그런 방안까지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겁니다.

○경찰청수사기획조정관 유승렬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박은정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 아까 전체 검토의견으로 낸 부분에 대해서 토론 다 해도 되는 거지요?

○소위원장 김승원 예, 그렇습니다.

○박은정 위원 법원행정처 차장님,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관련해 가지고 법무부·대검이 우려를 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일정 부분 일리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법원의 문제가 좀 크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너무 높거든요, 90% 이상. 그러니까 검찰에서 언론 기사 하나 붙여 가지고 압색 영장을 청구해도 거의 자판기처럼 압색 영장이 발부되다 보니까 그게 압수·수색 초기, 그러니까 수사 초기 단계부터 너무 피의자 인권침해가 심각하다, 피의자에게 방어권 측면에서 혹은 정말로 압색이 수사에 필요한 것인가를 법관이 객관적으로 좀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대법원에서 저희가 형사소송법 논의 전에 이미 압수·수색 사전심문제에 대해서 도입 검토 논의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예, 맞습니다.

○박은정 위원 그래서 대법원 예규나 이런 데 넣겠다고도 하셨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차라리 그것을 명문화시켜 가지고 하자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지금 찬성을 하고 계시는 건데 그런 취지가 맞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예, 그렇습니다.

○박은정 위원 그래서 이미 압수 단계에서 피의자는 악마화가 돼 버리거든요, 검찰 수사 과정에서. 그래서 수사권 남용으로 이어지고 압수·수색 단계에서 피의자가 전혀 방어하지 못한 채 혹은 그 수사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법관이 판단할 자료가 충분히 없는 상태에서 영장이 발부되고 또 별건수사로 이어지고 이런 문제점 때문에 이 규정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녹음 의무화 관련해서요. 차관님, 법무부가 의견을 안 내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의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아까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은정 위원** 여기 자료에는 지금 안 나와 있어서…… 일단 이것에 대해서 우려가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렇습니다.

○**박은정 위원**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전 과정을 녹음해야 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도 계속해서 정치적인 사건 선택적 수사, 검찰에서 검사가 피의자를 사전에 만나 가지고 밀실에서 면담하는 과정에서 피의자나 피의자 변호인과 사전에 진술을 회유하는, 자백을 강요하는 이런 부분을 밀 작업을 거치고 나서 그 다음에 피의자 조사를 하면서 조서를 받게 되니까 수사의 왜곡이 일어나고 위법 수사가 일어나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그러면 피의자 처음부터 조사 과정을 녹음하는 것은 어떤가, 그것으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겠다는 취지에서 저희가 법에 넣었고요.

그런데 경찰청에서 진술 녹음장비가 31% 정도밖에 안 돼 있다 지금 그런 의견이신 거잖아요?

○**경찰청수사기획조정관 유승렬** 녹화와 같이 포함해서요.

○**박은정 위원** 녹화와 같이하면?

○**경찰청수사기획조정관 유승렬** 예.

○**박은정 위원** 그러면 녹음은 어떤 것 같습니까? 지금 녹음이 의무화 규정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경찰청수사기획조정관 유승렬** 저희가 시간이 조금은, 예산을 미리 받아 놓은 게 아니라서 한 1년 정도는 유예기간을 뒤야만 100% 녹음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은정 위원** 100%.

○**경찰청수사기획조정관 유승렬** 예.

○**박은정 위원** 그런데 녹음은 그렇게 1년씩이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경찰청수사기획조정관 유승렬** 아무래도 녹음시설이 갖춰진 조사실에서 조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요.

○**박은정 위원** 맞습니다. 이게 경찰 수사에서도 마찬가지로의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경찰이 사건에 대한 과도한 몰입 그런 것 때문에, 공을 내야 된다는 이런 것 때문에, 혹은 또 다른 의도 때문에 진술을 회유하거나 밀 작업을 하고 조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건 녹음해도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의자가 경찰에 출석했을 때부터 전 과정이 녹음돼야 된다 그런 취지로 이 법이 규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나 행안부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찰청수사기획조정관 유승렬** 알겠습니다.

○**박은정 위원** 그리고 조정관님, 오늘 보완수사요구 이행 실질화 방안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가장 걱정이 공소시효 임박 사건 관련해서 하루이틀 남겨 두고 공소시효 임박한 사건이 검찰에 송치가 되면 검사가 보완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국민들의 우려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오늘 자료에 따르면 공소시효가 그렇게 하루이틀 임박해 가지고 송치되는 사건은 실무상 거의 없다라는 말씀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있다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현재 선거사건에서 하고 있는 필수협의를 전 공소시효 임박 사건에 확대해 가지고 검사하고 미리미리 협의를 하겠다…… 선거사건에서 이 협의는 통보부터 시작합니까?

○경찰청수사기획조정관 유승렬 예.

○박은정 위원 수사개시 통보부터 하고 중간에 또 이게 협의가 됩니까?

○경찰청수사기획조정관 유승렬 예, 중간에 협의도 되고……

○박은정 위원 중간에 협의가 되고……

○경찰청수사기획조정관 유승렬 3개월 전에는 협의가 다 완료될 것입니다.

○박은정 위원 협의가 완료돼서 송치 단계에서는 검사하고 마지막에 협의해 가지고 송치가 되는 이런 절차로 진행이 되는데 그것을 모든 공소시효 임박 사건으로 확대해 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경찰청수사기획조정관 유승렬 예, 맞습니다. 지금 경찰 KICS 시스템에 보면, 수사관들이 사용하는 온라인 시스템에 보면 자기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사건이 공소가 임박하다고, 3개월 전이라고 알람을 계속 띄웁니다, 물론 그 수사관을 관리하는 관리자 시스템에도 뜨고, 그러면 그걸 보고 이것은 공소시효가 3개월밖에 안 남은 사건이니까 그 단계에서부터 송치 전이라도 검사와 협의를 착실하게 해서 공소시효를 도과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 취지입니다.

○박은정 위원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공소시효를 얼마 앞두고 고소가 되거나 신고가 되거나 수사기관에 발고가 되는 그런 사건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건들은 경찰에 고소하거나 경찰에 신고하거나 검찰에 하거나 그건 마찬가지로 거거든요. 공소시효 하루이틀 앞두고 혹은 일주일 앞두고, 한 달 앞두고 신고가 되거나 고소되는 사건들은 경찰이 수사하는 것도 빠듯한 거고 검사가 수사하는 것도 빠듯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제도는 뭐냐 하면 경찰이 공소시효 임박해 가지고 검찰에 송치하지 않도록 혹은 불송치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검사하고 협의하겠다 그런 제도여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국민들의 불안을…… 불안해하시는 국민들께 잘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청수사기획조정관 유승렬 알겠습니다.

○박은정 위원 물론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그런 부분의 의견이 많이 반영돼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경찰청수사기획조정관 유승렬 예.

○박은정 위원 그래서 경찰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공소시효 임박 사건에 대해서는 절대로 범인, 피의자 하나라도 놓치지 않겠다 그런 각오로 이 문제를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청수사기획조정관 유승렬 알겠습니다.

○박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수고하셨습니다.

법원행정처 차장님, 이것 관련해서 뭐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하십시오.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중** 아까 질문하신 부분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관련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23년 2월에 대법원규칙으로 만들려고 입법예고를 했었습니다. 그때 수사 영역에 왜 법원이 간섭하려고 드느냐, 애매하면 발부하거나 기각하면 되지 그런 의견도 있었고 또 이렇게 중대한 사안은 법률로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안으로 올라와서 저희는 그 취지를 감안해서 의견을 드린 것이고요.

결국 영장 발부 여부에 관해서는 사법의 판단작용, 재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매하면 기각하거나 애매하면 발부할 게 아니고 의견을 들어서라도 제대로 된 사법 판단을 하자, 재판을 하자 그런 취지로 저희가 이 제도에 대해서 찬성을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공소시효 문제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일어난 일인데 경찰에서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공소시효 만료 한 달 전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했어요. 그런데 검찰에서 이것을 갖고 있다가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에 무혐의로 결정을 내려 버립니다. 고소인·고발인은 생업에 바쁘니까 그걸 잘 살펴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음 날 그냥 공소시효가 지나 버리고 끝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사안을 보면 충분히 선거법 위반 사건이에요, 제가 봐도. 유죄가 나올 만한 건데 그런 식으로 검찰에서 공소시효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저희는 그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그것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형사소송법안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법무부장관님도 자꾸 보완수사권 달라, 뭐 해 달라 이런 말씀 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런 실제로 일어난 검찰의 공소시효를 악용한 사례에 대한 대비책, 보완책도 사실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언론에 안 나와서 그렇지 사실은 큰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한 지역의 민의가 왜곡될 수도 있는 건데. 아무튼 그런 것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김용민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김용민 위원** 방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던 선거법 공소시효 문제와도 연결이 될 것 같은 한데, 어제오늘 기사가 난 것 같아요. 윤석열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죄 있지 않습니까.

유승렬 수사기획조정관님한테 질의드리는 겁니다.

당시 윤석열이 대선후보자 토론회에서 김건희가 주가조작 하지 않고 손해만 보고 나왔다고 한 발언 그리고 그 이후에도 유사한 발언들이 있어서 이것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경찰은 잠정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맞지요? 보도에 그렇게 나왔어요, 이미. 그렇게 해서 검찰에 송치했나요? 보도상으로는 송치 전 협의 단계인 것 같은 한데, 그 내용 지금 정확히 잘 모르시나요?

○**경찰청수사기획조정관 유승렬**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용민 위원** 나오실 때는 그런 주요 이슈는 좀 챙겨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경찰청수사기획조정관 유승렬**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뒤에 아시는 분 한번……

김용민 위원님, 아시는 분이 답변할 수 있도록 기회를……

○김용민 위원 실무자 중에 누구 아시는 분 있으면 나오시지요.

○경찰청수사기획담당관 이종서 바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러면 질의하는 동안 확인해 보시고요.

보도를 중심으로 말씀드립니다.

검찰은 기소할 수 없다라는 입장으로 지금 시간 끌기를 하고 있고 공소시효는 얼마 남지 않았다, 보도 취지는 이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경찰이 입장을 명확하게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법무부차관님, 좀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이 사건?

○법무부차관 이진수 경찰에서 현재 수사 중이고 아직 경찰에서 결론을 내려 가지고 송치하거나 불송치하지 않은 단계……

○김용민 위원 송치 전에 협의하잖아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경찰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용민 위원 공직선거법 사건, 송치 전에 협의하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이 내용 과정에서 협의가 진행되었던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러면 경찰은 송치의견으로 결론을 내려서 송치를 하려고 하는데 검찰이 지금 송치하지 말라고 누르고 있는 단계인가요? 그 보도는 맞나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 상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김용민 위원 혹시 경찰 쪽에서 확인되면 바로 말씀 주시고요.

○경찰청수사기획조정관 유승렬 예, 알겠습니다.

○김용민 위원 지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란을 저질렀던 윤석열을 여전히 검찰이 자기 선배라고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온 국민이 다 알아요. 법원에서도 이미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김건희 주가조작. 다 확인이 됐고 지금 구속이 돼 있는 상태인데 그 얘기를 한 사람에 대해서 왜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자꾸 누르려고 하는지, 검찰이 기소권 가지고 함부로 남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수사·기소 분리가 검찰개혁의 중요한 과제인데 수사·기소 분리가 완전히 되면 경찰 혹은 수사기관의 수사권을 어떻게 견제하고 통제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로 보완수사권 달라고 검찰은 얘기하는데 반대로 검사의 기소권, 여전히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 이걸 어떻게 견제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실행할 수 있게 할 것인가 이게 같이 논의돼야 돼요.

그런데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찰은 여기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습니다. 차관님도 여기에 대한 반성적인 어떤 말씀이 전혀 없어요. 그 사건 확인되는 대로 한번 좀 알려 주시고요.

그리고 기획조정관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균택 위원님 질의하실 때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적절한 내용이었다라고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경찰청수사기획조정관 유승렬 예.

○김용민 위원 그 취지는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개념보다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해서 이 사건들을 공정하게 수사해야 된다는 취지로 얘기하신

건가요?

○**경찰청수사기획조정관 유승렬** 맞습니다. 지금은 검찰에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경찰 아닌 제삼의 수사기관이 수사를 해도 실제적 진실 발견에 유리하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한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김용민 위원** 아까 제가 듣기에는 검찰에 수사권을 남겨 두자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건가라고 살짝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경찰의 입장도, 국가수사본부에서 나오셨다고 하니까 국수본 입장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남겨 둘 필요가 없다라는 입장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경찰청수사기획조정관 유승렬** 예, 그게 정부 방침입니다.

○**김용민 위원** 그렇지요, 정부 방침이지요. 정확한 답입니다.

그리고 아까 광주 장윤기 사건이나 그다음에 부산의 돌려차기 사건,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연일 경찰이 수사 잘못했다라고 혼나고 있지요. 그 부분은, 뭐 혼나야 될 건 당연히 혼나야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제도를 설계함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짚고 넘어 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특히 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에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못한 것, 강간목적살인으로 입건하고 송치하지 않은 것을 검찰이 바로잡았다라고 하는데 검찰이 보완수사를 직접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경찰에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방식으로든 바로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경찰청수사기획조정관 유승렬**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송치 전에 미리 협의가 안 돼서 저희가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구속기간 10일에 맞춰서 일단 일반살인사건으로 송치했고 그 이후에 성폭력범죄와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는 추가 송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검찰 단계에서 보완수사요구가 있었다 그러면 기소 단계에서는 강간목적살인, 강간살인으로 기소를 할 수 있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김용민 위원** 그러니까 보완수사요구로도 충분히 지금의 수사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라고 판단한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경찰청수사기획조정관 유승렬**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용민 위원** 그리고 아까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경찰청수사기획조정관 유승렬**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같은 경우도 공판 중에 새로운……

○**김용민 위원** 그랬지요, 그것도 항소심 중에.

○**경찰청수사기획조정관 유승렬** 예, 항소심 중에. 그래서 1심 끝날 때까지도 해당되는 핵심 증거인 DNA가 나오지 않았는데 그 부분을 보완수사의 개념으로 보기보다는 공판 진행 과정에서 좀 더 치밀한 수사를 또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과정이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당연히 공판검사도 수사했던 검사한테 요청을 해서 이루어진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과정을 검찰과 경찰로 대입해 보면 검찰에서 경찰로 보완요구를 하더라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용민 위원** 그 과정에서 보면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장을 했고 그것이 최종적으로 항소심 법원 재판장의 소송지휘와 말씀하신 DNA 분석 결과들이 나와서 진실이 확인됐고, 가해자에게 더 엄벌을 처하면서 피해자가 조금 더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건가요?

○**경찰청수사기획조정관 유승렬** 예.

○**김용민 위원** 그러면 아까 보완수사요구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같은 경우처럼 피해자가 형사절차 전반에 있어서, 수사 과정 혹은 재판 과정에 있어서 필요하면 피해자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낼 수 있고 의견 개진할 수 있고 그것이 법원이나 검찰 그리고 수사기관에 의해서 수용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고민 하고 계신가요?

○**경찰청수사기획조정관 유승렬** 예, 아까 보고드린 내용 중에 보면 수사심의위원회의 법제화가 있는데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수사심의위원회에 여성과 관련된 또는 성범죄와 관련된 특별소위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성인지 감수성이 풍부한 여성분들이나 또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면 그 소위에 출석해서 경찰 수사와 관련된 항변을 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그런 과정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본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피해자가 공판 단계 그건 모르겠지만 수사 단계에서는 충분히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봐야 된다고 봅니다.

○**김용민 위원**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 피해 입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서 가서 수사관 앞에서 다시 그 진술을 하는 게 굉장히 힘든 시간들이예요. 그래서 신뢰관계자의 동석 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진술을 하거나 때로는 경우에 따라서는 대질신문을 하지 않고 분리시켜서 영상녹화로 별도로 하거나 하는 다양한 피해자 보호제도들을 두고 있긴 한데 그 부분이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많이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사심의위원회 말씀하셨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수사심의위원회는 좀 멀게 느껴질 수 있어요. 당장 내가 가서 진술을 한 내 앞에 있는 수사관에게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피부로 느끼는 상황들이 존재한단 말입니다.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함께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사관 교체 요구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신뢰관계자의 동석 등등을 조금 더 확대해서 피해자가 현장에서 그런 두려움을 좀 떨쳐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법원행정처 차장님, 그런 의미에서 피해자가 재판절차에서 충분히 본인의 의견, 입장을 진술하고 싶다. 지금은 피해자의 진술권을 증인신문 방식으로 인정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중**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해 달라라는 요구는 사실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좀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중** 그런 요구가 많다는 걸 듣고 있습니다, 재판하는 입장에서는 제도화되기를 바라고,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재판이 굉장히 인력난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함께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김용민 위원** 동의합니다. 그 부분 같이, 사실은 형사법정 수도 더 늘려야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은 같이 가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피해자가 재판절차에서 충분히 자기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구조는 지금처럼 증인신문의 방식 정도로는 쉽

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 같이 제도를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예, 알겠습니다.

○**김용민 위원** 혹시 경찰 확인됐나요, 아까 그 말씀하신 게? 윤석열 공직선거법 사건.

○**경찰청수사기획조정관 유승렬** 이게 경찰 특수본에서 필수 협의 중인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이견이 있어서 계속 협의 중이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김용민 위원** 검찰과 이견이 있다라는 거지요?

○**경찰청수사기획조정관 유승렬** 예.

○**김용민 위원** 그렇지만 경찰은 지금 송치 의견인 건가요, 기사에 난 것처럼?

○**경찰청수사기획조정관 유승렬** 그것은 수사 진행 중이라 저희가 정확하게 지금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용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관님 돌아가셔서 지금 제가 문제 제기했던 이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왜 이견이 있는지, 불필요한 이견 제시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민 위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위원장님, 기회 주시면 지금 한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의견을 말씀드려도……

○**소위원장 김승원** 그러면 법무부차관님 답변 듣고 박균택 위원님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먼저 경찰에서는 이번 장윤기 사건 등과 관련해서 지금 이게 기관 간 어떤 충돌 문제 등등으로 비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지난번 소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장윤기 사건에 있어서의 핵심은 경찰에서 일반살인사건으로 송치한 사건을 검사가 다시 보완수사를 함으로써 증거를 보완함으로써 강간살인죄로 기소할 수 있었다, 그 사실이 전제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러한 과정에서의 증거인멸 등의 범행은 밝혀지지 않았을 것이고요. 경찰에서는 보완수사요구로 이것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만 지금 이와 같이 케이블타이를 은닉하고 케이블타이를 촬영하는 영상까지 폐기하는 그와 같은 수사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검사가 해당 사건에 대한 증거를 검토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내용을 파악하고 보완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뿐만이 아니라 여러 언론이나 다른 관심이 많으신 분들께서도 이것이 보완수사요구로 가능한 것인지 등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그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범죄피해자에 대해서 변호인을 통해 가지고 이의 제기라든지 변호인을 통해서 그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필요적 국선변호인 사건들이 여러 가지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선임할 수 있도록 개별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예컨대 성폭력범죄라든지 장애인범죄, 스토킹범죄 등에 대해서도 19세 미만의 자에 대해서는 필수적 선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9세 이상의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필수적 국선변호인 선임 제도가 아직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국가의 공무원인 검사가 내용을 검토해 가지고 피해자 권리구제를 하는 것이 맞다고, 더 타당한 방법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이거를 성인인 피해자들까지 확대할 경우에 여러 가지 선임 절차와 국가 예산 등도 추가로 투입되어야 된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민 위원** 위원장님, 사실관계 하나만 확인을 해 보고 싶습니다. 방금 차관이 얘기한 게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이라 사실관계 하나만 짧게만 좀……

○**소위원장 김승원** 예, 그러시지요.

○**김용민 위원** 차관님, 그러면 아까 광주 장윤기 사건에서 검사가 하늘에서 계시를 받고 갑자기 보완수사를 했나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아닙니다.

○**김용민 위원** 기록 보고 의심되는 점을 보완수사 했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렇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러니까 기록 보고 의심되는 점을 보완수사요구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런데 위원님……

○**김용민 위원** 그런데 그게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 다른 수사기관에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법을 당에서 발의해 봤지 않습니까, 김한규 의원안에.

그런 것들이 가능한데 마치 어느 날 갑자기 검사가 굉장히 큰 계시를 받아서 이거 다 숨겨 놔는데 ‘내가 갑자기 직접수사 해야만 발견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기록 보고 의심되는 점을 보완수사를 하다 보니까 확인된 거 아닙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 점에 대해서 보완수사를 통해서 그와 같은 혐의가 있다는 점을…… 해당 사건에서 직접적인 증거를 검토하고 당사자를 조사하고 SD 카드 등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해서 그와 같은 혐의가 있다는 점을……

○**김용민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얘기를……

○**법무부차관 이진수** 있다는 점을 해서 강간살인으로 기소가 됐기 때문에 이게 시작된 것이지 않겠습니까.

○**김용민 위원** 알고 있는데 그거를 검사가 기록에서 그 의문점들을, 단서들을 발견해서 직접수사 하다 보니까, 보완수사 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 은폐된 내용까지 확인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보완수사요구의 방식으로든 단서들을, 의심되는 점을 다 찾아서 보완수사요구를 보내도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 점에 대해서……

○**김용민 위원** 의심했던 출발점이 계시를 받아서 한 게 아니라 기록상 보고 했다는 게 맞지요? 그걸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이게 실체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역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는 경찰의 끈끈한 지역사회의 친분 관계 등이 언론에서 많이 지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건도……

○**김용민 위원** 김학의 사건에서 검사가 그래서 그렇게 판결을, 그렇게 결정했고 진동균

검사 사건도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까, 공정해서? 끈끈하지 않아서 그렇게 한 겁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이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게 앞으로, 수사 중에 있습니다만……

○**김용민 위원**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은 차관님……

○**법무부차관 이진수** 검찰이 보완수사요구를 했다고 해서 그것을……

○**김용민 위원** 잠깐만요, 차관님. 제 질문은 아주 간단한 팩트 체크입니다.

기록 보고 확인하신 게 맞냐는 걸 묻는 겁니다. 기록 보고 의심을 하게 된 게 맞는 거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의심했지만 직접 보완을 했기 때문에 강간살인으로 기소할 수 있었습니다.

○**김용민 위원** 아니, 그건 그다음 얘기인 것이고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다음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용민 위원** 기록을 보고 의심했는지 그 전 단계까지만 묻는 겁니다. 기록을 보고 의심한 게 맞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기록과 피의자 조사를 통해서 의심한 게 맞습니다.

○**김용민 위원** 기록을 보고 피의자 조사를 해서 질문을 했겠지요. 기록을 보고 의심한 게 맞냐고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기본 일차적으로는 기록에서 시작된 것이 맞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정리하시지요.

○**김용민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러면 한 가지만 확인을……

장윤기 사건 관련해서 검찰에서도 대국민 수사 결과 발표 이런 게 있습니까? 예정되어 있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지금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고 검찰에서도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 진행의 구체적인 진행 상황까지는 저희가 파악하지는 않고 있고요.

○**소위원장 김승원** 그러니까 발표를 하시냐고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수사가 마무리된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설명드려야 되지 않는가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생각하고 있다. 경찰도 수사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까?

○**경찰청수사기획조정관 유승렬** 어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추가로는 더 없고요?

○**경찰청수사기획조정관 유승렬** 그……

○**소위원장 김승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박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군택 위원** 차관님, 제가 지난번에 실무적으로 아주 디테일한 현장 실무를 중심으로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생길 수 있는 공백, 보완수사요구권이나 일반적인 협력 관계로서는 해결되지 않는 이런 공백이 있을 사건이 있으면 정리해서 법사위원들을 비롯한 위원들에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다 또는 자료를 배포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어떻게 작업 진행하고 계십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저희 지금 전체적인 독회 과정에 있는데요. 자료가 오늘 준비되어 있는 상태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오늘부터는 배포하고 설명드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박균택 위원** 알겠습니다. 잘 참고하겠습니다.

행정처 차장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사제도에 대해서 호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앞으로 개혁될 검찰이 그러지는 못하겠지만 과거에 검찰이 그랬고 또 앞으로 경찰이 그럴 수도 있고 이 압수·수색 제도를 너무 남발하는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전에도 내가 얘기했다시피 광산서에서 비롯된 문제고 거기서 이루어진 문제를 단순히 위의 상급기관이 보고를 받은 걸 가지고 이 사람들도 범죄자로 가담한 건 아닌지라는 이런 의심으로, 본인 기관들의 투명성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과잉수사가 됐다는 의혹이 저는 드는데 이런 것들은 압수·수색 영장을 왜 이렇게 쉽게 발부를 해 주는 것일까, 과거에는 또 왜 그랬을까 이런 의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전심사제도가 도입되면 분명히 좀 더 나은 건 있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기록을 보면 사전심사를 안 하더라도 이게 여론 무마용인지 아니면 표적 수사용인지 별건수사의 여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그 정도의 감을 갖고 판단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왜 지금은 그걸 못 하고 99%에 가까운 발부율을 보이는 것일까, 그런 부분에 저는 좀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제도가 도입되는 것 저는 찬성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당장 그런 부분들을 신중히 하도록 해 주실 수는 없을까요?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실무에 있어서, 99% 발부에는 아마 일부 기각되고 일부 발부까지 포함해서 그 정도로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영장 담당 판사들이 신중을 기할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의 취지는 존경하는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제한된 영역에서 공공한 부분에 관해서 판단을 좀 더 신중히 하자라는 취지이고요. 아마 이 제도가 도입이 되면 도입된 그 자체가 영장 담당 판사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때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살피는 계기는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균택 위원** 그런데 저는 지금도 가능한 것을 꼭 제도가 개선됐을 때만 가능한 것이냐 또 그때는 개선된다는 보장이 있느냐 그런 부분에 조금 의문을 갖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이 부분을 논의해 왔고 저는 찬성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니까 찬성을 하겠지만 아무튼 제도 운용을 신중하게 하는 노력은 이 변화와 상관없이 해 주는 게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예, 알겠습니다.

○**박균택 위원** 그리고 두 번째, 구속 사건 조건부석방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찬성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부분은 매우 흥미로운 주제인 거지요. 그렇지만 아무리 여기에 대해서…… 지금도 구속이 어렵게 되지 않습니까? 한덕수 전 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도 영장이 기각됐을 정도로 법원의 발부가 의외로 너무 지나치게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도입했을 때 결국은 주거 부정인 사람들 또 직업적인 안정성, 어떤

부의 측면에서 안정성이 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대로 그냥 구속이 집행되고 변호인을 잘 선임하거나 직장이 좋거나 뭔가 회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설마 도망가기가 하겠느냐라는 이런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석방되는 제도로 활용이 많이 돼 버릴까 봐 저는 그것을 걱정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것은 찬성론도 의미가 있고 반대론도 의미가 있지만 이처럼 중요한 재판제도의 변경, 인신구속 제도의 변경 문제가 검찰의 개혁 문제, 보완수사권 인정 여부와 관련된 논의에 끼어서 이렇게 쉽게 결정될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데 차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중** 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건은 요건에 맞으면 구속이 되고 또 요건에 맞지 않으면 기각이 될 겁니다. 다만 애매한 영역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은 이 제도가 피의자 인권 보호와 또 피해자 보호의 조화로운 점을 찾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실 스톡킹사범에 관해서는 고소나 고발이 있으면 다 구속해 버리면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살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맞는지, 이 사람의 주거가 일정하고 또 피해자가 어느 영장 단계에서는 처벌을 불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영장 담당 판사는 고민할 텐데 그렇다고 바로 기각을 하게 되면 또 피해자 위해 우려는 없는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일정한 조건을 붙여서 일단 영장을 발부하되 일정한 위해 가능성을 상쇄한 다음에 석방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바로 이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야만 이해가 쉬워서 예를 자꾸 드리게 되는데요. 제가 영장을 담당할 때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가정폭력범들이 그렇습니다. 가정에 의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들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구속되면 생계가 어려워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처벌불원서를 냅니다. 그러면 영장 담당 판사는 고민을 합니다. ‘피해자가 처벌 불원하는데 기각하지 뭐’ 그러면 다시 가정폭력이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접근금지 조치라든가 아니면 전자발찌를 채워서라도 피해자에 대한 위해의 우려를 상쇄시키면서도 계속 밥벌이는 하면서 자기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붙일 수가 있는 다양한 조화점들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제도를 찬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균택 위원** 수사기획조정관님, 아마 다음에도 또 출석하실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오시게 되면 특정 지역의 불신받는 수사 또 특정 지역의 과장된 걸로 보여지는, 오버한 걸로 보여지는 수사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신속하게 해소하고 주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거나 불안감을 해소해 줄 것인지 답을 좀 가지고 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찰청수사기획조정관 유승렬**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김한규 위원님.

○**김한규 위원** 법무부차관님께 질의드릴게요.

경찰이 부패한 집단인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대부분의 경찰들께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봉직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김한규 위원** 그러면 한 지역에 오래 있으면 다 부패한 경찰인가요? 유착이 다 됩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한규 위원** 그러면 이번에 장윤기 사건에서 이게 경찰 조직 전체가 부패해서 발생한 문제인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렇게 일반화하지 않습니다.

○**김한규 위원** 그러면 지금 구속된 분 그리고 또 몇몇 분이 더 관련돼 있을 수 있는데 그분들의 문제 아닌가요? 이게 경찰 조직 전체의 문제인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게……

○**김한규 위원** 그러면 경찰한테 수사를 맡기면 안 되는 것 아닐까요, 보완수사만이 아니라?

○**법무부차관 이진수** 저희가 그렇게 극단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한규 위원** 검찰은 믿을 수 있는 조직인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래도 검찰의 인사제도는 지역 간의 유착을 막기 위해서 아시다시피 1~2년마다 순환하는 인사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한규 위원** 그런데 이번 사건이 지역 간의 유착으로, 지역 토호하고의 무슨 유착 때문에 발생한 문제인가요, 장윤기 사건의 수사 문제가?

○**법무부차관 이진수** 저희는 그렇게 말씀드릴 바 없습니다.

○**김한규 위원** 그런데 아까도 인사이동 문제 얘기하시고 지금도 상피제같이 순환 이동을 통해서, 인사를 통해서 문제가 안 생기는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그 부분은 이번 장윤기 사건의 문제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인사이동을 자주 하는 게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역과의 유착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윤기 사건하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경찰 식구, 경찰 가족이라서 이것을 봐주려고 했던 게 문제인 거잖아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런 측면이 주된 이유입니다만 경찰관들 같은 경우에는 한 지역에서 그리고 인사이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시나 도내에서 이동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아는 분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부탁 내지는 선처를 바란다는 등의 부탁을 받을 가능성은 검찰공무원보다는 경찰공무원들이 더 높은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한규 위원** 그러니까 경찰분들은 그 부탁을 받으면 듣는 분인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아니, 그렇게 일반화하지 않습니다.

○**김한규 위원** 검찰은 그런 부탁 받으면 들으시나요?

저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유착 관계가 있고 가깝더라도 공무원이 그런 부정한 요청을 받으면 거부, 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경찰이라서 그런 가능성이 더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기준으로 보면 검찰이 인사를 되게 빈번하게 해서 서로 같이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많아요, 검사들끼리는. 그러면 검사는 전국적으로 검사들끼리 친밀한 관계를 하고 특수수사라든지 아니면 합동수사라든지 큰 수사를 통해서 같이 근무할 기회가 있어서 인적 교류가 많고 수사를 같이하면서 교류할 기회가 있어서 검사들끼리의 잘못된 판

단을, 유착 관계가 있어서 특정 검사하고 관련된 사건들은 봐줄 우려가 더 많은 거지요.

그렇지만 저는 검사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인사 교류가 있다고 해서, 검사들이 특정 지역에, 고향에 가서 근무한다고 해서 그 고향 사건을 부정하게 해결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검사나 경찰이나 국회의원이나 공무원들 개개인이 실수할 수는 있겠지만 그걸 그 집단 전체의 문제로 일반화할 수는 없다, 다만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럴 기회를 최대한 막고 제도적으로 견제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찰이 인사를 주기적으로 돌리면서 특정 지역하고 유착하지 않게 하는 것은 되게 좋은 인사제도라고 생각하는데 경찰이 사안의 특수성 아니면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표현이 좀 그렇지만 직급이 낮은 공무원들이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일하는 것 자체가, 많은 경우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지역하고 유착됐다 그래서 그 공무원들은 공정하게 일하지 못한다라고 전제하는 것은 저는 좀 동의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보완수사요구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보완수사요구를 잘 안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보완수사가 더 효율적인 방안이니까 직접 사건관계인들을 불러서 얘기를 들어 보는 게 사실관계를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모든 사건에 있어서 보완수사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완수사요구 제도도 현재 있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잘 활용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수사 경험이 오래되고 그러신 분들은 기록을 보면서 의구심을 찾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모든 사건에 조금 의심이 있다고 이해관계자 부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하고 10월 2일 이후는 달라지는 게, 중수청에 우수한 수사인력들이 되도록 많이 그쪽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여하튼 중대범죄수사청이라고 해서 경찰 내에 다른 수사 기관도 생기기 때문에 만약에 특정 사건에 있어서 해당 경찰, 경우에 따라 경찰 조직 자체를 믿을 수 없다고 하면 중대범죄수사청에다 맡길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정 경찰이 잘못했고 특정 경찰의 이해관계 충돌이 있을 수 있어서 경찰 조직 자체를 못 믿는 사안들이 항상 발생할까, 그것 자체는 저는 의문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드렸던 사안인데, 검찰은 보완수사가 계속 남아 있기를 원하시겠지만 또 그렇게 필요하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보완수사요구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검찰 입장에서 볼 때 향후 보완수사요구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라든지 보완책들 의견을 준비해서 제출해 달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거든요. 주시지 않아도 좋아요. 그런데 주시지 않으면 반영되지 않습니다. 안 주실 건가요? 제출하시지 않을 건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지금도 10%가량의 사건을 보완수사요구를 통해서 보완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실효성을 담보하는 방안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준비해서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저희가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마련해서 위원님께 설명드리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규 위원** 이상입니다.

○**박은정 위원** 제출하셨어요? 제가 못 받아 가지고……

○**법무부차관 이진수** 아직 제출한 바는 없다고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

비를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다른 위원님……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님, 이번 장윤기 사건의 핵심은 어쨌건 수사한 경찰이 증거를 은닉하거나 누락한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소위원장 김승원 지금 검찰은 압수·수색 나갈 때 아마 보디캠을 차고 현장을 녹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찰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조정관님한테 물어볼까요? 어떻습니까?

○경찰청수사기획조정관 유승렬 경찰은 수사경찰이 현장에 나갈 때는 보디캠을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시위나 아니면 파출소 같은 경우는 착용합니다. 그리고 이번 건은 사진을 이렇게, 사건현장 사진을 계속 찍었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지금 장윤기 사건의, 그래도 근본적으로 이것을 대비하려면 제 생각에는 수사 과정을 전부 다 녹화해서 경찰청 데이터베이스라든가 거기다가 다 보관시키는 것이, 그것을 의무적으로 시키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검찰과 마찬가지로 경찰에서도 압수·수색 현장에 보디캠을 착용하고 가서 현장이 다 녹화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다음에 보관된 것들을 나중에 검사든 혹은 사건관계인이든 요청을 하면 사후에라도 수사가 종료된 후에는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조정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경찰청수사기획조정관 유승렬 검토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법원에서도 민사, 형사, 가사 신청 등 모든 기록들을, 자료들을 다 전산화·전자화시킨다고 그러셨지요?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중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전자화시킨다고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그럴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거나 정보를 특정 사람들만 독점하고 있으면 거기에서 특권이 생기고 카르텔이 형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꾸 정보는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투명하게 하고, 물론 비실명 처리되어서 공개하는 것이 되겠지만 아무튼 그런 것을 다 전자화시켜서 보관하는 것이 이런 장윤기 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유력한 방지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한번 행안부차관님과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법무부차관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그러면 보완수사권을 검찰이 가지고 있을 때 늘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구체적인 사례를 예를 들면 윤석열 부인 김건희 씨가 고가의 목걸이를 차고 다니는 것이 국민 앞에, 영상 앞에 다 찍혔는데 그래서 ‘저것은 공직자 재산신고 목록에 안 들어 있는 것인데 왜, 저게 어디서 났지’ 하면서 그것을 시민단체라든가 이렇게 고소·고발을 했던 말입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반클리프 목걸이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하더니 무혐의를 해 버렸어요.

저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 저게 그러면 빌린 것이면 빌린 것이다, 누구 것이면 누구 것이다 그런 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무상으로 빌렸으면 그것 역시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런 설명 없이 그냥 무혐의를 때려 버렸습니다. 그러다 결국

에는 반클리프 목걸이가 뇌물로서 받은 것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뻔히 보이는 것조차 검찰에서 그렇게 처리를 해 왔는데 과연 아무런 통제 없이 보완수사권을 유지하거나 주게 된다면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국민들께서 우려하는 부분이고요.

이번에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 씨가 ‘김건희 씨는 손해만 봤다’라고 했는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의 입장은 무혐의다라는 것이고 그 이유는 당시 4000만 원 정도 손해를 본 사실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허위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논리인데 그런데 이것도 사실 2013년도에 금감원 쪽인가요 경찰 쪽에서 이상한 주식거래 신고 그것을 보고 나서 내부적인 조사를 한 다음에 이것은 주가조작 의심이 든다고 해서 수사를 시작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지금 검찰 조사에서 완전히 막혀 있었던 것 아닙니까, 2013년, 14년도 사건이?

그때는 윤석열 씨가 중앙지검장이든 뭐든 하여튼 검찰의 유력한 지위, 위치에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권오수라든가 이땡땡이라든가 김땡땡이 수사를 제대로 받지 않고 계속 피해 다니다가 결국에는 이게 10년이 거의 돼서야 수사가 이루어지고 다 유죄판결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제가 볼 때도 주가조작을 재판했던 또 주가조작 사건을 변호했던 제 입장에서는 이런 게 주가조작이 아니면 도대체 어느 게 주가조작이냐, 도대체 어느 게 자본시장법 위반이냐, 저는 납득이 되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필귀정이라고 다 유죄 쪽으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윤석열이 그것을 다 김건희 씨, 자기 와이프 일이니까 알았을 거고 그다음에 제가 볼 때 수사 과정에 분명히 영향력을 끼쳤을 거고 그다음에 김건희·최은순 씨 통장이 수십 개가 동원됐다는 것도 알았을 거고 그다음에 2억~8억의, 제가 볼 때는 최소한도로 추정한 금액의 이득을 얻었다는 것을 2013년도부터 문제가 되어 왔던 사건인데 그것을 몰랐을 리가 없는데 당시 4000만 원 손해 본 것밖에 없다, 김건희는 손해만 봤다라고 하는 그 진술이, 대국민들 앞에서 한 진술이 허위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저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아직도 국민들께 검찰의 입장이 제대로 설명도 안 되고 납득도 안 시키는 이 상황에서 정말 수사권과…… 사실은 저는 기소권, 기소의 판단권까지도 지금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 이것을 국민들께 또 아니면 저 같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납득을 시키고 처리할 것입니까? 그것에 대한 걱정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장윤기 건으로 인해서 자꾸 경찰의 어떤, 뭐랄까요 유착 관계라든가 혹은 증거 인멸·누락만 언론도 그렇고 국민들께서 그것에 대해서만 분노를 하시는데 아직도 여러 건에 있어서 수사권이든 기소권이든 가지고 있는 기관들이 이런 권한을 남용하거나 오용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방지책을 만들어 보자고 하는 것이 제 의견이고 형사소송법 개정할 때 동시에 그런 방지책을 마련해 드려야 국민들께서도 그래도 좀 개선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판단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것 윤석열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 한 번 더 알아보시고 다음번에 또 아마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저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위원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그 사건은 특검에서 수사를 했다가 국가수사본부로 이첩을 했던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지금 얼마나 수사 협의가 진행됐는지 제가 정확한 상황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건의 수사 주체는 경찰이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송치 전에 검찰과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경찰이 지금 독립적인 수사 주체로서 수사 협의를 거친 다음에 경찰도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단계에서 어떤 상황인지 또한 오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여기 언론보도를 보면 ‘검찰은 혐의 성립이 어렵다는 의견을 경찰에게 전달했고 2010년 상반기 당시 김건희 씨가 실제로 4000만 원 정도의 손실을 본 사실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씨의 2021년도 대선 당시의 발언은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됐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아까도 말했지만 2013~2021년 제대로 된 검찰 수사를 분명히 막은 자가 있고 그 중심에 윤석열 씨가 대검의 감찰, 검찰과장이든 뭐든 다 핵심에 있고 그래서 권오수·이정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녹취록에 보면 그런 것들이 다 나오는데 윤석열 씨가 2010년 상반기 4000만 원 김건희가 손실을 본 사실이 있으니까 이것을 허위임을 몰랐을 것이라라고 연결시키는 게 맞느냐, 그 10년 동안의 세월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무혐의하면 이것은 저도 그렇고 국민들께서도 납득이 안 될 것이라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이것 역시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인데요. 검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고 피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하루 전에 무혐의 결정을 해 가지고 고소인, 고발인의 이의신청이랄까요 항고권을 완전히 박탈한 그런 사례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평택지청의 신봉수가 한 겁니다, 진윤 사단.

그게 장난치는 거지 뭐 하는 겁니까? 그것을 한 달 동안 가지고 있다가 하루 전에 무혐의를 해 버려요? 고발인이 그러면 우왕좌왕하다가 하루 금방 지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언제 항고장을 쓰고 언제 합니까? 그런 것 좀 하지 마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그렇게 될 소지가 있어요. 검찰이 반대의견 하면서 계속 가지고 있다가 하루이틀 전에 또 무혐의 해 버리고 하면 판단권 이런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하지 않고 믿음을 줘야 보완수사권을 국민들께서도 허용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지지가, 판단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다음에는 정확하게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 쪽에서도 어떤 협의가 오갔는지 아마 저희가 질의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오늘 드디어 네 번째, 형사소송법 개정안 전체 부분에 대한 독회를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1항부터 3항까지의 법률안은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고 다음 회의에서는 쟁점별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의견을 조정해 가고 모아 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요.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수 차관님, 기우중 차장님, 김민재 차관님, 유승렬 조정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좌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경위, 속기사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석 위원(6인)

김남희 김승원 김용민 김한규 박균택 박은정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전문위원 최기도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법무부

차관 이진수

행정안전부

차관 김민재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 유승렬

○법원측 참석자

법원행정처

차장 기우중